

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검토보고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
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691호
- 나. 제출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5. 5. 29.
- 라. 회부일자 : 2025. 5. 29.

2. 제안이유

직장·공장새마을운동금천구협의회가 설립되어 새마을운동조직에 이를 추가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새마을운동조직에 직장·공장새마을운동금천구협의회 추가(안 제2조)

4. 관계법령

-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 제2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구에 직장·공장새마을운동금천구협의회가 설립되어 새마을운동조직에 이를 추가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
○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

- 안 제2조에서 새마을 운동 조직에 직장·공장새마을운동금천구 협의회를 추가 규정함.

○ 우리구는 2024년 10월 직장·공장새마을운동금천구협의회가 설립됨.

직장·공장새마을운동금천구협의회 현황

○ 단체명 : 직장·공장새마을운동금천구협의회

○ 회원수 : 총 12명

- 조직구성 : 회장 1, 부회장 2, 총무 1, 감사 2, 대의원 6

○ 회장 선임·인준 결과

직위	성명	생년월일	임기	비고
회장	김용성	60.10.22.	초임 (24.10.~'27.10.)	한일크린 대표이사 (관내 청소대행업체)

- 임기 : 3년(2024.10.08. ~ 2027.10.07.),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

- 인준권자 : 직장·공장새마을운동서울특별시협의회장

○ 본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1. 관계법령 1부.

2. 타 자치구 조례 현황 1부. 끝.

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

[시행 2019. 12. 10.] [법률 제16766호, 2019. 12. 10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새마을운동조직”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,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, 직장·공장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, 새마을문고중앙회,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.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붙임 2

타 자치구 조례 현황

(2025. 5월 기준)

연번	자 치 구	새마을조례 제2조 ‘새마을운동조직’ 정의 표기 방법	직장 · 공장협의회		장학생 추천권자 (직장공장회장 포함여부)
			조례 근거	설치 여부	
1	종로구	새마을운동중앙회 등 4개 단체 및 그 산하 계통 조직	○	○	○
2	중구	새마을운동중구지회, 새마을지도자중구협의회, 중구새마을부녀회, 새마을문고중구지부, 각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, 새마을문고			
3	용산구	용산구새마을회, 새마을지도자용산구협의회, 용산구새마을부녀회, 새마을문고용산구지부 그 산하단체(동 조직을 포함) 및 협력단체			
4	성동구	새마을운동 성동구지회, 새마을지도자 성동구협의회, 성동구 새마을부녀회, 새마을문고 성동구지부와 그 계통 조직	○	○	×
5	광진구	새마을운동광진구지회, 새마을지도자 광진구협의회, 광진구 새마을부녀회, 직장·공장새마을운동 광진구협의회, 새마을문고 광진구지부,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조직	○	○	추천규정 없으나, 장학생 선정 협의회에 직장공장회장 포함
6	동대문구	새마을운동동대문구지회, 새마을지도자동대문구협의회, 동대문구새마을부녀회 및 새마을문고동대문구지부(각 동주민센터 새마을조직 포함)			
7	중랑구	새마을운동중랑구지회, 새마을지도자중랑구협의회, 중랑구새마을부녀회, 새마을문고중랑구지부 및 그 계통조직			
8	성북구	새마을운동 성북구지회, 새마을지도자 성북구협의회, 성북구새마을부녀회, 새마을문고중앙회 성북구지부,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			
9	강북구	새마을운동 강북구지회, 새마을지도자 강북구협의회, 강북구 새마을부녀회, 새마을문고 강북구지부,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조직	○	○	×
10	도봉구	새마을운동도봉구지회, 새마을지도자 도봉구 협의회, 도봉구 새마을부녀회, 새마을문고 도봉구지부,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조직			
11	노원구	새마을운동 서울특별시 노원구지회, 새마을지도자 노원구협의회, 노원구 새마을부녀회와 그 계통조직			
12	은평구	새마을운동은평구지회, 새마을지도자은평구협의회, 은평구새마을부녀회 각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			
13	서대문구	새마을운동서대문구지회와 새마을지도자서대문구협의회, 서대문구새마을부녀회, 새마을문고중앙회서대문구지부, 직·공장새마을서대문구협의회 이하 그 산하단체(읍면동 조직을 포함) 및 협력단체	○	○	×
14	마포구	새마을운동마포구지회, 새마을지도자마포구협의회, 마포구새마을부녀회, 직장·공장새마을운동마포구협의회, 새마을문고중앙회마포구지부,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	○	○	○
15	양천구	새마을운동양천구지회, 새마을지도자양천구협의회, 양천구새마을부녀회, 새마을문고양천구지부, 직·공장새마을운동양천구협의회	○	× (21년 폐지)	○

연번	자 치 구	새마을조례 제2조 ‘새마을운동조직’ 정의 표기 방법	직장·공장협의회		장학생 추천권자 (직장공장회장 포함여부)
			조례 근거	설치 여부	
16	강 서 구	새마을운동강서구지회, 새마을지도자강서구협의회, 새마을문고 강서구지부, 강서구 새마을부녀회	×	○	×
17	구 로 구	구로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, 새마을부녀회, 새마을문고	×	○	×
18	금 천 구	새마을운동금천구지회, 새마을지도자금천구협의회, 금천구새마을부녀회, 새마을문고중앙회금천구지부			
19	영 등 포 구	새마을운동 영등포구지회, 새마을지도자 영등포구협의회, 영등포구 새마을부녀회, 새마을문고중앙회 영등포구지부	×	○	×
20	동 작 구	새마을운동 동작구지회, 새마을지도자 동작구 협의회, 동작구 새마을부녀회,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조직			
21	관 악 구	새마을운동 관악구지회, 새마을지도자 관악구협의회, 관악구 새마을부녀회, 새마을문고 관악구지부,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조직	○	○	○
22	서 초 구	새마을운동서초구지회, 새마을지도자서초구협의회, 서초구 새마을부녀회			
23	강 남 구	새마을운동강남구지회, 새마을지도자강남구협의회, 강남구새마을부녀회,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			
24	송 파 구	새마을운동송파구지회, 새마을지도자송파구협의회, 송파구새마을부녀회, 직장·공장새마을송파구협의회, 새마을문고송파구지부 및 그 산하단체(각 동주민센터 조직)	○	○	○
25	강 동 구	서울강동구새마을회, 새마을지도자강동구협의회, 강동구새마을부녀회, 새마을문고강동구지부, 그 산하단체(동 조직을 포함)			